

1. 개정이유

약사법 제20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, 원활한 약국 실태조사를 위해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관련기관·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를 정하고, 해당 업무에 전문성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위탁기관으로 지정 및 위탁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,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 관련 단체에게 업무 협조 요청 가능
- 나.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태조사 관련 업무 위탁, 위탁 업무 범위 설정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- 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3) 행정규제 : 해당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3(업무 협조)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다음 각호의 기관에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2.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 관련 기관·법인·단체 또는 전문가

제22조의4(실태조사의 위탁)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제20조의2 제3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태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1. 약국 실태조사를 위한 법 제69조에 따른 현장조사, 검사, 문서열람 및 자료제출 요구 등
2. 약사법 제6조제3항·제4항,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위반 약국에 대한 수사의뢰 및 수사협조 등 수사 지원 사항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(신 설)	제22조의3(업무 협조)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다음 각호의 기관에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.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 관련 기관·법인·단체 또는 전문가
(신 설)	제22조의4(실태조사의 위탁)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제20조의2 제3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태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 1. 약국 실태조사를 위한 법 제69조에 따른 현장조사, 검사, 문서열람 및 자료제출 요구 등 2. 약사법 제6조제3항·제4항,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위반 약국에 대한 수사의뢰 및 수사협조 등 수사지원 사항 부 칙 이 영은 2024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.